

#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

##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



### 아파트 및 별도품목 공급대금

아파트 공급금액

원

① 자금 조달 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	원
		원	원		원
		④ 증여·상속	⑤ 현금등 그 밖의 자금		원
		원	원		원
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존비속 (관계: )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관계( )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 현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자산 (종류: )		원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	⑦ 소계 (②+③+④+⑤+⑥)		원
	원		원		원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	주택담보대출	원
		원		신용대출	원
				그 밖의 대출	원
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		대출 종류: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보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 ( )		건	
⑨ 임대보증금 등	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등		원	
원		원		원	
⑪ 그 밖의 차입금		⑫ 소계 (⑧+⑨+⑩+⑪)		원	
원		원		원	
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존비속 (관계: )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관계( )				원	
⑬ 합계 (⑦+⑫)				원	
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원
	⑮ 계좌이체 등 금액	원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등 금액	원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원
지급 사유 ( )		

⑱ 입주 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입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     년      월)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 (전·월세)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별표 1 제2호 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·제7항·제9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     타입      동      호      계약자:      (인)

#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

##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SAMPLE



\* 본 안내문의 금액 및 표시사항은 예시사항이며, 계약별·주택형별·옵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

### 아파트 및 별도품목 공급대금

아파트 공급금액				
아파트 총 공급금액 기재(분양가+발코니+유상옵션)			원	
① 자금 조달 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
		본인 명의의 예금 (적금 등) 원	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	
		④ 증여·상속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
	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원	[보유 현금 + 그 밖의 자산] 금액 원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존비속 (관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, 모, 자녀 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관계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 현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자산 (종류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융상품 (펀드·보험) 해지금 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⑦ 소계 (②+③+④+⑤+⑥)	
	타 부동산 매도액, 기존 보증(전세)금, 중전부동산 권리가액 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 원		[②+③+④+⑤+⑥]의 총 금액 원	
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	주택담보대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자금 (작성생략) 원	
	[주택담보대출 + 신용대출 + 그 밖의 대출] 금액 원		신용대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원	
			그 밖의 대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 중도금 집단 대출 및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 원	
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보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회 취득 주택 제외, 분양권, 입주권 포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)	
	⑨ 임대보증금 등	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등	
	취득 주택 향후 임대시 실행 계획 (자금 ⑩입주계획: 임대 체크 시) 원	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원	
	⑪ 그 밖의 차입금		⑫ 소계 (⑧+⑨+⑩+⑪)	
가족 / 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원		[⑧+⑨+⑩+⑪]의 총 금액 원		
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존비속 (관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, 모, 자녀 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관계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	
⑬ 합계 (⑦+⑫)		[⑦+⑫]의 총 금액 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아파트 총 공급금액 기재(분양가+발코니+유상옵션) 원	
	⑮ 계좌이체 등 금액		총 거래 금액과 동일한 금액 기재 원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등 금액		작성생략 원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작성생략 원	
지급 사유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작성생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	
⑱ 입주 계획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본인입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)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 (전·월세)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

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', 별표 1 제2호 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·제7항·제9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84A(예시) 타입 1001(예시) 동 102(예시)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계약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홍길동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###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사항

- ※ 2023년 10월 19일 부터 개정·시행되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에 의거하여 **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「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」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.**
- ※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대량 신고하여 계약자님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.
- ※ 아래 항목에 따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주택취득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하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※ 단, 향후 법 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구분	항목	상세항목	내용
자기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	·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로의 자금(예적금 등)
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· 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· 이에 준하는 자금
	④ 증여·상속	가족 등 증여·상속	·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
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보유 중인 현금	·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아니하고 보유 중인 현금
		펀드·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· 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·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·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· 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· 재건축·재개발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
이에 준하는 자금		· 부동산 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·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신용대출	·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그 밖의 대출	·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⑨ 임대보증금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·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√ 체크, 보유란에 √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(보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
	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·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⑩ 회사지원금·사채	신규 임대차 계약	·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·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⑪ 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· 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	
자금지급 방식	⑫ 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· 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⑬ 보증금·대출 승계	기존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승계	·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⑭ 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·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⑮ 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·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예정인 경우	·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(예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·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· 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**과태료가 부과**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, 자세한 사항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